

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공고

우리 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『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』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82조 및 ‘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’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54호, 2016.11.10.)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거를 위해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31일

성 동 구 청 장

1. 열람기간: 2023.11.1.(수) ~ 2023.11.29.(수) 09:00~18:00

※ 토·일·공휴일 제외

2. 열람장소: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 (고산자로 270)

※ 간이(개인정보 제외) 선거인명부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상 열람가능

3. 열람내용: “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”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

4. 안내사항

가. 선거권에 대한 사항

-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,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나.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- 1)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 명의변경, 기재사항의 누락·오기 등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작성 후 선거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(방문 또는 우편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) 제출서류: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<제1호 서식>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

다.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

- 1)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공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기간 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토지등 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2)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수에 관계없이 선거권은 1개입니다. 다만, 부동산 중 일부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(공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등)이고 각각 대표소유자 선임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수의 선거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3) 제출서류

가)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<제2호 서식>

나)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

※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중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라.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

- 1)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·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 - 가)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
※ 미성년자는 직접 선거권 행사 불가
 - 나)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
 - 다)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

2) 제출서류

가) 위임장·대리인 지정서 <제3호 서식>

나)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

다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류 1부(※해당자에 한함)

라)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해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※해당자에 한함)

마)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(※해당자에 한함)

마. 소유권 변동(매매, 상속 등)에 관한 사항

- 명부 작성 이후 소유권 변동(매매, 상속 등)이 발생한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자료(등기부등본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바. 열람에 관한 사항

-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(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)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하여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,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습니다.

※ 제출서류 중 서식(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,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, 위임장·대리인 지정서 등)은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, 금호2,3가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성동구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sd.go.kr>) ‘행정정보 > 정보공개 > 행정자료실’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함

5. 문 의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재개발지원팀(☎.02-2286-6565)

<제1호 서식>

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

1. 권 리 내 역 :

2. 신 청 인

- 성 명 :
- 생년월일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3. 이의신청내용

--

첨부 : 증빙자료 1부.

상기 본인은 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위원 등(부위원장 및 위원) 선출과 관련하여 열람한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.

2023 년 월 일

신청인 :

(서명) 지장날인

성동구청장 귀하

<제2호 서식>

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

1. 소유권 현황

권리 내역	토 지	소 재 지 (공유여부)	면적(m ²)
		(계 필지)	
		()	
		()	
		()	
권리 내역	건축물	소 재 지 (허가유무)	동 수
		()	
		()	
		()	

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_____을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 금호제21 주택정비형
재개발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위원 등(부위원장 및 위원) 선출과 관련한
토지등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23 년 월 일(제출일 기재)

○ 대표자(선임수락자)
성 명 : (서명) 지장날인
생 년 월 일 :
전 화 번 호 :

○ 위임자(동의자)
① 성 명 : (서명) 지장날인
생 년 월 일 :
전 화 번 호 :
② 성 명 : (서명) 지장날인
생 년 월 일 :
전 화 번 호 :
③ 성 명 : (서명) 지장날인
생 년 월 일 :
전 화 번 호 :

첨부 :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

성동구청장 귀하

<제3호 서식>

위임장·대리인 지정서				
신청인 (위임하는 자)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(휴대전화)		
대리인 (위임받는 자)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(휴대전화)		
신청인과의 관계	☐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중 성년자 ☐ 해외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 ☐ 법인인 토지등소유자			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제4항, 제118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82조제1항에 따른 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위원 등(부위원장 및 위원) 선출에 관련한 선거의 선거권자(법인대리인의 경우 피선거권 포함)로서 법률이 정한 권한을 행함에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. 2023 년 월 일 신청인 : _____ (서명) 지장날인 첨부 1.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2.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류 / 재외국민등록부등본 / 법인 등기사항증명서) 1부 성동구청장 귀하				